

# 개인형 이동장치(PM) 안전 이용 자료

전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

## □ 개인형 이동장치(PM) 정의 및 종류

### 1. 정의(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)

개인형 이동장치(Personal Mobility - PM)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,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

### 2. 종류(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)

- 전동 킥보드
- 전동 이륜평행차(세그웨이)
- 전기자전거(스토틀 방식)
- ※ 전동스케이트보드, 전동외륜보드(원휠), 전동이륜보드(투휠)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차로를 통행해야 함.(자전거도로 통행할 수 없음)

## □ 시기별 법 개정 주요 내용

구분	~ 20. 12. 9.	20. 12. 10. ~	21. 5. 13. ~
유형	원동기장치자전거	개인형이동장치	개인형이동장치
주행 도로	차도	자전거도로 (부재시 차도 가장자리)	자전거도로 (부재시, 차도 가장자리)
면허	○	×	○
연령	만 16세 이상	만 13세 이상	만 16세 이상
인명보호장구	의무 (위반시 범칙금)	의무 (위반시 제재없음)	의무 (위반시 범칙금)

## □ 교통법규 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방법

-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. 단,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
-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함
- 만16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음
-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
- 인도로 주행할 수 없음
- 동승자 탑승금지
- 음주운전 금지

## 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수칙

- 안전속도(전주시 조례 20km/h 이하)를 지키고 과속금지
- 교통법규 준수(신호위반 금지, 중앙선 침범 금지, 지정차로위반 금지)
- 보행자 및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,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안전하게 이동
- 운행 중에는 휴대전화나 DMB 사용 불가
-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
- 비 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운행할 경우 속도를 50% 이상 줄여서 운행
- 횡단보도, 빙판길, 비포장도로 등에서는 내려서 끌(들)고 이동
- 타이어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
- 급경사나 장애물 등을 피하고 야간운행 시 전후방 반사체 부착
- 보험 가입(대인·대물 배상 등)

## □ 배터리 화재 예방

- 규격에 맞지 않거나, 다른 회사 충전기를 활용하는 것은 배터리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
- 충전은 실외공간에서 충전하도록 하고,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질 접근금지

## □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시 주의사항 및 처벌조항

구분	중전 도로교통법	개정('20.6.9.)	재개정('21.1.12)	
시행일		'20.12.10.	'21.5.13.	
법적 지위	원동기장치자전거	(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시) 개인형 이동장치		
통행방법	'차도' 통행 원칙 ( '보도' 통행 불가)	"자전거도로" 통행 원칙 ( "보도" 통행 불가)		
운전면허	원동기면허 이상	×	원동기면허 이상 ※ PM면허 신설 예정	
무면허 운전 처벌	○ (30만원 이하)	×	○ (20만원 이하 범칙금)	
만13세미만 운전금지 ( '21.4월 이후 만16세 미만)	×		○	
만13세미만 운전시 보호자 처벌 ( '21.4월 이후 만16세 미만)	×	×	○ (20만원 이하 과태료)	
운전자 주의의무	동승자 탑승금지	×	○	
	위반 시 처벌	×	○ (20만원 이하 범칙금)	
	안전모 착용	○ (오토바이용 안전모)	○ (자전거용 안전모)	
	처벌	○ (20만원 이하 범칙금)	×	○ (20만원 이하 범칙금)
	등화장치 작동	○		○
	처벌	○ (20만원 이하 범칙금)	×	○ (20만원 이하 범칙금)
	과로, 약물 등 운전	○		○
	처벌	○ (약물:3년 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 과로: 30만원 이하 범칙금)	×	○ (20만원 이하 범칙금)
주요처벌 조항	음주운전	1년 이하 징역, 500만원 이하	범칙금 3만원	하위법령 정비 중 (변동가능)
	신호 위반, 중앙선 침범, 보도 주행, 보행자 보호위반	범칙금 4만원	범칙금 3만원	
	지정차로 위반 (상위차로 통행)	범칙금 2만원	범칙금 1만원	